

【 2015.08.13(목) 강원도민일보 】

# 강원건설 하반기 경기예보 ‘맑음’

## 이달말부터 1조3000억원 규모 본격 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에 계약률 50%↑ 기대

강원건설 하반기 경기는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12일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에 따르면 올해 발주 건설물량은 동계올림픽 분야를 포함해 총 3436건에 금액으로는 3조원 규모다.

지난해는 신규 사업만 종합 건설은 1

조4286억원, 전문건설은 2490억원으로 총 1조6776억원의 공사 물량이 발주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는 올해 발주 물량 중 상반기에 55% 정도인 1조 7000억 원이 계약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1조3000억 원 규모 공사 물량

은 휴가 시즌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발주된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지역의무공동도급 때문에 앞으로 발주될 공사 물량 중 최소 49%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만을 상반기에 총 5222억원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 중 2568억원(49.1%)을 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전국 입찰로 진행될 공사도 도내 업체가 수주할 수도 있어 최종 계약률은

50%를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금액으로만 6500억 원을 넘어 하반기 강원건설 경기도 활황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도내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동계올림픽 대형공사 중심으로 발주돼 지역 업체들이 큰 혜택을 못 봤다”며 “올해는 공사 규모가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도내 업체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 2015.08.13(목) 건설경제 】

# ‘영업정지’ 건설사 권익 되찾아 준 ‘권익위’

“지자체 정당한 소명절차 없이 내린 처분은 취소해야” 판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구제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356개의 종합건설사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권익위의 이 같은 조치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원청건설사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하도록 재결했다.

하청업체가 원청사에 청구한 기성금의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영업정지를 철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다. 기성금이란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비례한 공사대금을 뜻한다.

이 같은 중앙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지자체 등 행정청이 내린 처분을 취소하는 효력이 있다. 즉 원청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즉각 취소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지자체 처분을 중앙행정심판에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안을 보면 하청업체인 B사는 원청업체인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

특별시는 B사가 미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비해 일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사실만 확인했다. 이어 A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 를 처분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원도급업체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 조사 결과 ‘기성을’에 관한 다툼은 있지만, 계약체결 당시 A사는 이미 하도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A사가 B사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선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A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만약 선금을 포함할 경우 오히려 A사는 B사에 기성금을 초과 지급하게 된다는 게 행정심판의 설명이다.

이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B사의 신고 내용에 관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체들은 이 같은 행정심판의 판단을 반기는 모습이다.

경기도의 한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까지 우리에게 보장된 청문 및 소명절차가 있긴 하지만 업체들은 실제 잘못을 떠나

그 절차가 충분치 않다고 느낀다”면서 “정부차원(권익위)의 구제방법이 있는 줄 알았다면 한번 시도해봤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해 4개월 가량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행정심판위는 1년 전에도 한 조경공사업자에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내려진 ‘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행정심판자는 “조경업의 진술을 왜곡하고 석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며 업체에 내린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청이 처분 전 정당한 절차를 거

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 건별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도 다를 수 있다” 면서도 “하지만 법리가 비슷한 사례에는 판례로서 효력이 미친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 건설 취업자 5개월연속 ‘상승곡선’

지난달 187.4만명으로 전월보다 4000명 늘어

건설업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7만 4000명으로 전월(187만명) 대비 4000명 늘어났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 183만 8000명, 올 1월 175만 8000명, 2월 173만 2000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하고서 3월 들어 177만 7000명으로 반등했다. 4월(183만 8000명)에는 4개월 만에 180만 명을 회복한 데 이어 5월(186만 2000명)과 6월에도 소폭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184만 9000명) 대비로는 2만 5000명 증가했다.

다면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증가폭은 다소 축소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보면 제조업(17만명·3.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8만 9000명·7.6%), 숙박 및 음식점업(7만 5000명·3.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6만 5000명·9.1%) 등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9만 1000명·-5.7%), 금융 및 보험업(-6만 2000명·-7.4%) 등에서 감소했다.



명으로 전년 동월(259만 9000명) 대비 32만 6000명 늘어났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4월 20만명대로 내려온 이후 5월 들어 30만명대를 회복하고서 3개월째 30만명선에 머물렀다.

당초 2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취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고용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경남기자